

의안번호	제497호
의결 연월일	2013년 6월 일 (제321회)

**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임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6월 3일

#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6월 3일

발 의 자 : 임 현, 김희수, 심기보,  
김봉희, 김형근, 정지숙,  
김종필 의원

## 개정이유

-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 권한으로 명시되어,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·징수의 시장·군수에 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)에 의거,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·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, 동조례에 근거조항을 반영하고,
-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### 가. 근거법령 변경(안 제1조)
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경제

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추가

○ 관광진흥법 제35조 → 관광진흥법 제37조

○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→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

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

○ ~의 규정에 의하여 → ~에 따라

○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관광진흥법」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4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35조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37조제1항에 <u>따른</u>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생략)</p>	<p>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여기서 특수한 사정 이라 함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여기서 특수한 사정 이라 함은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</u>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과징금 처분대상) 도지사는 「<u>관광진흥법시행규칙</u>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를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과징금 처분대상) 도지사는 「<u>관광진흥법시행규칙</u>」 제4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를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등) ① <u>도지사는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(내부위임)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u></p>	<p>제5조 (삭제)</p>
<p>제6조 (생략)</p>	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) 경제자유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. 다만, 제5호, 제7호, 제9호, 제12호, 제18호의 사무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6.9, 2010.4.15, 2010.5.31, 2011.4.4, 2011.4.12, 2011.4.14, 2011.7.21>

11.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, 제5조, 제15조,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, 제77조,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, 사업 계획 승인,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

[전문개정 2009.1.30]

### 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28조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(이하 "경제자유구역청"이라 한다)는 법 제27조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사무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받은 국가사무 또는 시·도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11.8.5>

### □ 관광진흥법

제37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

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(過徵金)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25>

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

## □ 관광진흥법시행규칙

제43조(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·유지)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.